

2025년 대한탁구협회 계약직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공고

대한탁구협회(Korea Table Tennis Association)는 신입 행정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사원	디비전리그 총괄관리자	1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	• 디비전 사업 전반 총괄기획 • 리그관리, 시도관리자 관리 및 교육 등
총 인원		1명		

※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음

※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디비전리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변경될 시, 계약은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형태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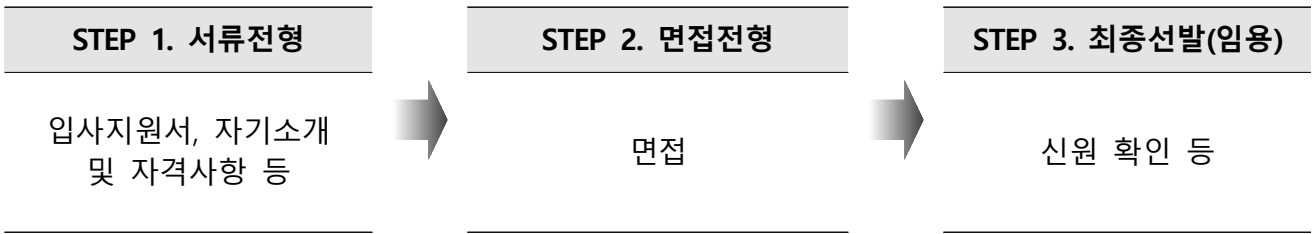
채용분야	계약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계약연봉
디비전리그 총괄관리자	계약직	주 5일(월~금) 40시간 (09:00 ~ 18:00) ※ 유연근무제로 출근시간 조정 가능하며 대회 등 출장으로 주말 근무할 수 있음	대한탁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209호)	2025. 10. 15. ~ 2027. 1. 31. (약 1년 3개월)	세전 연 37,792,200원

※ 계약연봉 : 기본연봉 + 명절상여금 + 교통비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임용예정일 전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탁구협회 처무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학교 휴학 또는 재학 등을 사유로 입용일 즉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구 선수 경력자• 운전이 가능한 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경험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처리 시스템) 사용 경험자

4 전형 절차



5 채용일정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접수)	2025. 9. 1.(월) ~ 9. 11.(목), 10일간 ※ 접수일자 이후 제출건은 접수하지 않음
서류 평가일	2025. 9. 16.(화) ▶ 합격자 발표 : 2025. 9. 19.(금)
면접심사	2025. 9. 30.(화) ※ 면접 대상자에 한해 세부 시간 및 장소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5. 10. 2.(목)
근로계약 체결	2025. 10. 13.(월) ※ 당사자와 일정 조율 예정
정식임용	2025. 10. 15.(수)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상황 및 대한탁구협회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주요내용

구분	전형요소
서류전형	<p>[서류전형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평가(30점) : 학부성적(20점), 자격증(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 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정성평가(70점) : 자기소개서(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경력 및 경험, 직무수행 의지 및 포부, 문서작성 능력 등 평가 - 지원자격 부적격 또는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가점(10점) : 탁구 선수 경력자 및 스포츠지도사자격증 보유자(5점), 직무관련 경력(5점)

[정량평가]

① 학부성적(20점)

- 최종학교 학부성적(평균 평점) 기준, 2개교 졸업 시 최고성적 1개 점수 부여
- 국외대학 졸업자인 경우 국내학점 기준 환산 후 적용

구분	상 4.5	중상 4.49-4.0	중 3.99-3.5	중하 3.49-3.0	하 2.9 이하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2점

② 자격증(최대 10점)

- 영어회화능력, 문서작성능력
- 각 분야별 자격증을 합산하되,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 산업기사 보유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만 인정 → 5점 부여)

분야	자격증명	5점	4점	3점
영어회화능력	OPIc	AL	IH	IM3
	TOEIC Speaking	160이상(AL~AH)	140~150(IH)	130(IM3)
문서작성능력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3급
	정보처리(전산분야 제외)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MOS MASTER (WORD-EXCEL-PPT)			보유자

[정성평가]

서류전형

① 자기소개서(70점)

- 관련 경력 및 경험, 직무수행 의지 및 포부, 문서작성 능력 등 평가
- (유의사항)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경우 (서류전형 종료 이후 적발된 경우에도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음)
 - 회사명(대한탁구협회)을 잘못 기술한 경우

[가점]

① 탁구 선수 경력자 및 스포츠지도사(탁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가점 최대 5점 부여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전문선수	10년 이상	9~7년 이상	6~3년 이상	2년 이상	
동호인선수	-	10년 이상	9~7년 이상	6~3년 이상	2년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1급	2급			
전문 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생활, 유소년, 노인 포함)			1급	2급	

- * 동호인 선수의 경우 소속 시도(시군구) 활동 확인 공문 제출
- *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는 탁구 종목만 해당

② 직무관련 경력에 대해 가점 최대 5점 부여

- 직무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합산
-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만 경력을 인정
(경력증명서가 아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불인정)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동종 직무에 경험을 가진 자 (디비전리그 사업 경험자)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유사한 직무에 경험을 가진 자 (회원종목단체 근무 경력자)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턴					1회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방법]

- 서류평가 70점 미만자는 탈락
- 채용 인원수의 3배수 선발(서류평가 고득점자 순위별), 적격자 많을 경우 5배수까지 선발 가능
- 서류전형 100점 만점에 최대 20점 가점 반영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지원서 접수결과 면접전형 선발 최소인원 수(3배수)가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 실시

[면접전형 배점 : 총 10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전문성	◦ 사업 관련 이해	30
	◦ 스포츠 행정 관련 경험 및 지식	30
발전가능성	◦ 사업 전략 수립/실행 계획	20
성실성	◦ 가치관, 태도	20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방법]

- 면접평가 70점 미만자는 탈락
- 면접평가 점수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처리 : 성실성 → 전문성 → 발전 가능성 고득점자 순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예비 합격자 운영방법]

- 면접평가 차순위 1명을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 합격자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발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접수 (webmaster@koreatta.or.kr) • 메일제목 : 2025년 신입 행정직원 지원(성명) •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문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webmaster@koreatta.or.kr) 혹은 유선전화 (02-420-3053)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는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 시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메일로 지원서를 발송 완료했다라도 협회 담당자에게 미도착시 이유 불문 미접수 처리(지원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입사지원서 등 제출된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응시 부적격 또는 채용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 취소는 물론 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며, 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제출시기	지원 제출 서류	용도
서류전형 지원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사지원서 (엑셀파일로 제출) ②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④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 ⑤ (해당자) 경력기술서(소정양식) ⑥ (해당자) 자격증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1개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p>※ ①입사지원서 제외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요망</p>	입사지원 확인용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③ 전체 학위 졸업(예정)증명서 ④ 전체 학위 성적증명서 ⑤ (해당자)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된 근무처에서 발급된 것으로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⑥ 징계사실유무확인서(발급처 : 스포츠윤리센터) ⑦ 공정채용확인서 ⑧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확인서 ⑨ 보완서약서 ⑩ 청렴서약서 ⑪ 채용신체검사서(원본) 	결격사유 확인용

※ 협회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 및 평판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전·현직 근무처 등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과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임용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탁구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www.koreatta.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5. 9. 1.

참고 1 임용결격사유 관련 규정

대한탁구협회 처무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 8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